

특집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 환경부 자료제공 -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제10조 및 제41조, 시행령 제5조, 제8조 및 별표1,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회용품 규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회용컵·접시·용기”라 함은 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의 재질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느 것과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한다.

2. “나무젓가락”이라 함은 나무 재질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표면을 윗칠 등으로 가공처리하여 반복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3. “1회용 수저(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라 함은 합성수지 재질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4. “1회용비닐식탁보”라 함은 합성수지재질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되어 식탁 위에 제공된 것을 말한다.

5.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첨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이라 함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한다. 다만,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상당기간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 홍보물 및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 중 고객이 상당기간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성격의 선전물은 제외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이라 함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7. “1회용 치약 · 샴푸 · 린스”라 함은 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8. “1회용 봉투”라 함은 합성수지 · 종이(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첨합된 용지를 포함한다)등으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처방전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소형봉투는 제외한다.

9. “1회용 쇼핑백”이라 함은 합성수지 · 종이(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첨합된 용기를 포함한다)등으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서 별도의 손잡이가 부착된 것을 말한다.

10.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라 함은 쌀, 보리쌀 등 곡류를 익힌 밥 또는 이에 육류 · 어패류 · 채소류 등 동 · 식물성 식품을 원료로 하여 수제 · 조리 · 가공 · 제조 등의 방법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찬류를 함께 또는 따로 담거나 햄버거류(샌드위치를 포함한다) 등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담는 용기(뚜껑 또는 덮개의 유무를 불문한다)로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로 내측이 도포 · 첨합된 종이용기는 합성수지로 제제된 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11. “1회용 응원용품”이라 함은 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장의 범위)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준수하여야 할 사업장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일반 음식

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유홍주점)를 말한다. 다만, 편의점 · 슈퍼마켓 ·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다리 기타 음식물에 뜨거운 물을 부어두는 경우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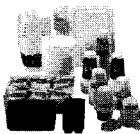
2.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 학교 ·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3. 목욕장 :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 목욕장(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및 특수목욕장(사우나탕, 증기탕, 복합목욕탕(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을 말한다.

4.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 :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호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여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원여관, 여인숙) 중 객실이 7실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5.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 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6. 도 · 소매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 · 소매업(제5호의 도 · 소매업을 제외한다)으로 매장면적이 33m²이상인 판매업소를 말한다. 다만 규모가 33m²미만의 도 · 소매업소에 대하여는 시 · 군 · 구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다.



특집

7.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말한다.

8.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증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 사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업종범위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9.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제4조(사업장별 1회용품 사용 규제사항) 사업장별로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가. 1회용컵(종이컵·합성수지컵·금속박컵 등), 1회용접시(종이접시, 스티로폼 접시, 금속박 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 용기 등),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를 제외한다), 1회용 비닐식탁보 또는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를 식탁 위에 비치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할 때 함께 제공하는 행위. 다만,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2. 목욕장, 숙박업소(7실이상)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를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3.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가. 1회용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나. 무상 제공금지 준비 및 이를 안내하지 않는 행위

(1) 판매한 1회용봉투, 쇼핑백을 고객이 되가져올 때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봉투·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알기 쉽게 하여야 함.

(2) 1회용봉투·쇼핑백의 판매가격은 고객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1회용봉투·쇼핑백의 사용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책정되어야 하고, 일반 상품가격과는 별도로 판매량에 따라 지불되도록 하여야 함

(3) 환불제 또는 사은품제 등을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고객이 사용한 후 되가져와 반납한 1회용봉투·쇼핑백은 재사용하거나 재활용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라.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행위(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경영자에 한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규모는 1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백화점 내 생활용품 판매매장의 상품진열대에 재활용제품 진열대를 구분·설치하거나 유사한 일반제품의 판매매장에서 재활용제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개 품목이상의 재활용제품을 유사한 일반제품 수량의 5%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재활용제품을 교환·판매하는 장소와 취급품목에 대하여 출입구 등 이용객이 많은 장소에 안내표지를 게시하거나 안내게시판·팜플렛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1)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일반제품과의 가격비교 등 재활용제품을 일반상품과 구분하여 표시·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도·소매업

가. 1회용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다만, 매장면적이 33㎡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나. 무상 제공금지 준비 및 이를 안내하지 않는 행위 : 판매한 1회용봉투·쇼핑백을 고객이 되가져올 때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봉투·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알기 쉽게 하여야 함

다.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5.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또는 합성수지로 제조된 1

회용 도시락용기(대규모점포 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사용행위

6.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사업 : 1회용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7.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행위

제5조(1회용품 사용규제의 예외) 1회용품 사용역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가.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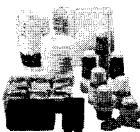
음식물 제공에 필요한 1회용컵·접시·용기를 사용하는 행위와 식사시 필요한 나무젓가락, 1회용수저·포크·ナイ프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사업자는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1회용품의 제공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합성수지 재질 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음료류를 판매하는 자동판매기에 1회용컵을 사용하는 행위. 이 경우 먹는 물 자동공급기에 사용되는 봉투형 1회용컵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라.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특집

마.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2. 목욕장 및 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경우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소매센터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4.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여기서 밀봉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 또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 유통을 차단시키는 포장(레토르트포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경우

5.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으로 매장면적이 150m²미만이거나,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여기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이상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우라 함은 사업장내에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재질별로 분리·수거 후 회수된 폐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실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재활용관련 계약서 및 폐1회용품 인수인계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

우에 한한다.

제6조(대상 사업장의 지도·점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및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등의 대상사업장(이하 “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구분하여 별표1과 같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점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업소 현황
2. 전년도 점검실적, 이행실태 및 문제점
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계획
4. 중점 점검사항 등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사업장의 이행 상황을 효율적으로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환경·위생·보건·산업 등 관계 부서간 관련자료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동점검을 실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방법 및 요령) ① 지도·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지도·점검표에 의한다.

② 지도·점검은 반드시 당해 사업장의 관계인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표에 입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인이 서명날인 거부 등의 사유로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도·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결과 처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표) 1회용품 주요 점검사항

구 분	주요 점검사항
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품(1회용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 1회용수저·포크·ナイフ·이쑤시개, 비닐식탁보)를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제공시 함께 제공하는지 여부 ○ 배달시,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여부 ○ 1회용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컵 회수대 등 회수설비 설치여부 - 사업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품의 90%이상을 회수하는지 여부 - 회수된 폐 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재활용하는지 여부 및 그 입증서류구비여부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2. 목욕장업, 숙박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품(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의 무상제공 여부 ○ 1회용품을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비치하는지 여부
3.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및 도·소매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봉투, 쇼핑백의 유상판매(환불제, 사은품제 포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봉투·쇼핑백을 사용매수에 따라 금액을 지불토록 하는지 여부 ○ 1회용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금지방법의 안내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이 알아보기 쉽도록 안내문을 게시했는지 여부 - 사업장에서 자체제작한 1회용봉투·쇼핑백을 사용하는 경우 안내문 인쇄 여부 ○ 환불제, 사은품제를 실시하는 경우 회수된 1회용봉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핑백의 재사용·재활용여부 ○ 합성수지 도포·첩합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 백화점·대형업소 등의 경우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 설치·운영 및 안내표지판 게시 등 홍보여부,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여부
4.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 제조가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매장 내 사업장에서 1회용합성수지용기 사용여부 ○ 기타 사업장에서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여부 ○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합성수지 사용시 밀봉포장에 해당되는지,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용기여부
5.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배포 여부
6. 기타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 도포·첩합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주 1)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165㎡이상인 판매업소

2) 매장면적이 165㎡미만인 판매업소

3) 금융업·운동장 등 자원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6, 7호 업소

에 의한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 제1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제9조(1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홍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사업자에게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계도하고, 주민들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결과 제출) 시·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자체 등에 대한 시·군·구별 조치사항을 취합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의 시행일부터 환경부훈령 제185호(1999. 3. 4)는 이를 폐지한다.

② (경과규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1회용 비닐식탁보, 제5호 가목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에 사용된 합성수지용기를 제외한다). 제7호의 1회용 응원용품 및 제4호의 도·소매업 중 약국 및 서점의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금지에 관한 사항은 2003. 7.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제6조 관련)

2-1.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대상사업장의 숫자 및 전년도 점검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에 따라 점검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결과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점검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165m^2$ 이상인 사업장 : 분기 1회

(2) 객실과 객석면적이 $33m^2$ 이상 $165m^2$ 미만인 사업장 : 반기 1회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m^2$ 미만인 사업장 : 연 1회

나. 목욕장·숙박업소 : 분기 1회

다.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소매업소

(1)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 분기 1회

(2) 매장면적이 $165m^2$ 이상인 판매업소 : 분기 1회

(3) 매장면적이 $165m^2$ 미만인 판매업소 : 연 1회

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 시행규칙 별표2 제5호 가목 사업장 : 분기 1회

(2) 시행규칙 별표2 제5호 나목 사업장 : 반기 1회

마.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분기 1회. 단, 경기가 없는 분기는 제외함

바. 기타 사업장 : 연 1회

2-2. 수시점검

수시점검은 다음 각목의 경우에 실시한다.

가. 기 위반업소에 대하여 확인점검이 필요한 경우

나. 법령을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라. 기타 언론보도, 민원제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ko]